

협력 중개업소 등록 신청서

■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신청

상호명		사업자 등록번호	
대표자명		연락처	
사업장 주소			

※ 고객등록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 : 11월 12일 10시 ~ 12월 02일 18시 까지

■ 유의사항

1. 수수료 지급대상 및 기준

주택전시관에 고객 명단이 접수되고 입찰참가를 한 고객 중 낙찰되어 본 계약이 체결된 점포에 한정하여 지급함.

2. 접수방법

입찰등록 및 개찰 전일 18시까지 Fax접수분만 인정 Fax)053-751-4800

3. 수수료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유의사항

- ① 고객등록신청서에 고객등록정보, 추천인(부동산중개업소)을 표기해 Fax접수한 건에 한함.
- ② 고객등록 중복 발생시 날짜, 접수시간 순서로 인정.

4. 제출 서류 (등록서류 - Fax발송)

- ① 협력중개업소 등록 신청서 ② 고객등록신청서

5. 제출 서류 (수수료 지급 서류 - 지급대상자 선정 시 방문 제출)

-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② 대표자 및 계약자(추천고객) 신분증 사본 각 1통
- ③ 대표자 통장사본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⑤ 대표자 도장

상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신청서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읽어보았으며,
“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스퀘어” 단지내 상가의 협력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합니다.

2019년 월 일

대표자명 : (인)

- 1. 본 신청서를 제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(사업자)가 ‘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스퀘어’ 단지내 상가 분양과 관련 추천고객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체결 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.
- 2. 추천고객이 중복된 경우 고객 등록 신청서의 접수일, 접수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하며, 동일한 날짜, 동일한 시간에 중복 접수되어 확인이 불가할 경우 ½로 나누어 지급함.
- 3. 중개사무소 Fax 날짜, 시간 오류 및 확인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. (필히 확인요망)
- 4. 수수료는 협력 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.